



#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## 제 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

---

1. 전자관보 제21213호(2026.04.07)와 관련입니다.

2. “운송사업 경영 및 주차편의 제고를 위하여 현행 등록 차고지에서만 가능한 밤샘 주차를 「주차장법」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”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및 시행(‘26.04.07)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= 아 래 =

### 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(별표3, 별표5)

가. 전세버스가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「주차장법」

제2조1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주차장에서 주차한 경우 **밤샘주차 허용**

나. 전세버스를 영업 중에 「주차장법」 제2조1호 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에

밤샘주차하는 경우 **밤샘주차 허용**

※ 시행일 : 공포한 날부터 시행(‘26.04.07)

## <주차장법 제2조>

1. “주차장”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.

가. 노상주차장(路上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(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의 일정한

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(一般)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나. 노외주차장(路外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

에 제공되는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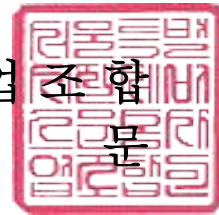
다. 부설주차장: 제19조에 따라 건축물, 골프연습장,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(附帶)

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·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※ 붙임 : 전자관보 1부. [끝]

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[www.tourbus.or.kr](http://www.tourbus.or.kr)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 
이사장 오성

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상 무 박호동 이사장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6- 74호 ( 2026.04.08 ) 접수 ( )  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  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